



KOLAS-R-003 : 2020

숙련도시험운영기준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The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OTIE, Korea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기준은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라 한다)가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또는 메디컬시험기관의 KOLAS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숙련도시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있다.

②숙련도시험 결과가 KOLAS 공인기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KOLAS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모두 스킴의 설계와 운영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참가기관과 평가사들이 숙련도 스킴에 대한 KOLAS의 방침, 숙련도시험 스킴에서 성공적인 수행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그리고 숙련도시험의 불만족 결과에 대한 사후 방침 및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본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KOLAS와 평가사들은 이 기준에 의한 숙련도시험 등이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시험 데이터의 적합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설정값(assigned value)”이란 숙련도시험 아이템의 특정량에 귀속된 값을 말한다.

②“KOLAS 공인기관(KOLAS accredited laboratories)”이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시험, 교정,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에 대한 하나 이상의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③“시험기관간 비교(interlaboratory comparison)”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시험기관이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시험 아이템에 대하여 시험을 구성, 수행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④“측정심사(measurement audit)”란 기준시료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시험, 측정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⑤“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 : RM)”이란 측정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말한다.

⑥“인증표준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 : CRM)”이란 하나 이상의 명시된 특성에 대해 특성값과 불확도 및 측정소급성을 제공하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동반하여, 측정학적으로 유효한 절차에 의해 특성화된 표준물질을 말한다.

⑦“참가자/기관(participant)”이란 숙련도시험아이템을 수령하거나,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 의한 검토를 위해 결과를 제출하는 시험기관,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일부 경우, 참가자는 검사기관이 될 수 있다.

⑧“숙련도시험(proficiency testing)”이란 시험기관간 비교를 통하여 미리 확립된 기준에 대한 참가자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기준의 목적상, 숙련도 시험이라는 용어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며, 다음이 포함된다.

- 정량적 스킴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숙련도시험아이템의 측정량을 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경우
- 정성적 스킴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숙련도시험아이템의 특성을 식별하거나 기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경우
- 순차적 스킴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숙련도시험아이템이 시험 또는 측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배포되고 일정간격으로 운영기관에 회수되는 경우
- 동시적 스킴 : 숙련도시험아이템이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동시 진행 시험 또는 측정을 위해 배포되는 경우
- 일회성 시험 : 숙련도시험아이템을 단 1회만 제공받는 경우
- 연속적 스킴 : 숙련도시험아이템을 정해진 간격으로 제공받는 경우
- 샘플링 : 후속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 자료 변환과 해석 : 일련의 데이터나 다른 정보가 주어지거나, 그 정보에 대한 해석(혹은 다른 결과)을 진행하는 경우

2. 메디컬 분야의 일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은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이나 좀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외부품질평가(EQA)”(KS Q ISO/IEC 17043 부속서 A 참조) 관련 용어를 활용한다. 이 기준의 요건은 숙련도시험 정의를 만족하는 EQA 활동만을 포함한다.

⑨“숙련도시험아이템(proficiency test item)”이란 숙련도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샘플, 제품, 아티팩트(artefact), 표준물질, 장비, 측정표준 혹은 일련의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를 말한다.

⑩“숙련도시험 운영기관(proficiency testing provider)”이란 KS Q ISO/IEC 17043에 따라 인정받은 KOLAS 공인기관으로서, 숙련도시험 스킴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⑪“숙련도시험 스킴/프로그램(proficiency testing scheme)”이란 시험, 측정, 교정 또는 검사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라운드로 설계

되고 운영되는 숙련도시험을 말한다.

1. 숙련도시험 스킴은 숙련도시험아이템에 대한 특정 유형의 시험, 교정, 검사 또는 여러번의 시험, 교정 또는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스킴’ 대신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⑫“위탁기관(subcontractor)”이란 이 기준에서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고, 숙련도시험 스킴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기관과 관련된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위탁계약” 용어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협력자(또는 협력기관)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인용표준 및 관련법령) 아래의 규격은 본 기준에서 인용됨으로써 이 지침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참고규격은 최신본(추가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1. KS Q ISO/IEC 17043 적합성평가-숙련도시험 일반 요구사항
2. KS Q ISO/IEC 13528 시험소 간 비교 숙련도 시험용 통계적 방법
3. KS A ISO 170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4. KS A ISO Guide 35 표준물질-균질성 및 안정성의 평가와 특성화에 관한 가이드선스
5.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KOLAS-R-001)
6.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R-002)
7.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R-006)
8.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KOLAS-R-010)

제2장 숙련도시험 운영스킴 참가 요구사항 등

제4조(숙련도시험 참가 요건) ①숙련도시험을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KOLAS가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KOLAS가 활용할 숙련도시험 스킴 중 기타 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은 KS Q ISO/IEC 17043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요구되고 준수여부는 심의에 의해 확인한다. 단, KOLAS로부터 인정된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스킴의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다만 해당 인정분야의 숙련도 시험이 없거나 인정의 신규/확대 신청 시

적합한 숙련도 시험이 없는 경우는 KOLAS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측정심사 또는 비교시험(시험소간, 시험자간)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별표 2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운영절차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를 실시한 경우, 각 인정 스킴의 운영요령에 의한 숙련도시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KOLAS가 운영을 허용한 스킴/프로그램일 경우라도 운영절차, 수행도, 평가 결과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스킴/프로그램의 실적을 무효화할 수 있다.

⑤제2항의 승인 여부를 위해 KOLAS는 「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숙련도시험 참가 실적 및 주기) ①최초로 인정 신청하는 기관은 신청 전에 신청분야의 대분류별로 1개 항목 이상(단, 교정기관의 경우는 중분류별로 1개 항목이상), 인정분야의 확대 신청시는 중분류별 1개 항목 이상 KOLAS가 허용하는 숙련도 시험 또는 측정심사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단, 메디컬시험기관의 경우는 대분류별로 1개 항목이상).

②인정범위 확대의 경우 동일 중분류라도 소항목간 특성이 전혀 다른 경우(시험방법의 유사성이 없는 경우) 추가항목에 대한 별도의 숙련도시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KOLAS 공인기관은 인정분야의 측정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중분류별로 KOLAS가 허용한 숙련도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단, 메디컬시험기관의 경우는 대분류별로 1년에 2회이상).

제6조(운영스킴 공지) ①KOLAS는 KOLAS 공인기관이 숙련도시험 참가를 계획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1에 해당하는 숙련도시험 운영스킴 등을 공지할 수 있다.

②숙련도시험 스킴에는 모든 기관이 참가할 수 있으나 시험시료의 제한 또는 스킴의 특수성, 스킴의 개발 및 운영을 고려하여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숙련도시험 등 참가) ①KOLAS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신규기관 또는 KOLAS 공인기관은 숙련도시험 참가를 계획하고,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을 운영하는 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②숙련도시험 스킴의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스킴에 따라 다양하며 스킴을

- 시작하기 전에 유형별로 규정된 비용이 참가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③숙련도시험 스킴 참가기관은 숙련도시험운영기관에서 공지한 참가요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험결과를 해당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 ④참가기관들 사이에 순회되는 측정비교시험에서는 참가자들은 시료의 특성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 ⑤숙련도시험 참가기관들의 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타당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는 것은 참가기관들의 책임이다.
- ⑥필요한 경우, KOLAS는 APAC에서 운영하는 국제 숙련도시험스킴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불만족 결과 등의 시정조치) ①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그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참가기관의 조치가 적절함을 확인할 때까지 참가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불만족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불만족 결과에 대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 결과를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의 적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파악된 잠재적인 원인
2. 시정조치 내용
3. 참여기관이 취한 시정조치가 효과적임을 확인한 증빙자료(예:표준물질을 이용한 재시험 결과 등)

③해외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한 기관이 불만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KOLAS 사무국에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효성 검증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검증계획을 대신 첨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검증이 실시되고 결과의 적절성이 확인 될 때까지 참가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KOLAS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가 적절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얻거나 적합한 평가사와 함께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⑥KOLAS 공인기관은 불만족 결과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시정 또는 예방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숙련도시험 수행도에 대한 자체 기록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⑦의심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은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조치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참가기관의 차기 평가(갱신평가 또는 사후관리) 시 KOLAS 평가반이 확인하며, 해당 시정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유의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9조(처분 등) ①KOLAS는 불만족한 결과를 산출한 참가기관에 대하여 해당 숙련도시험 스킴의 불만족 수행도 및 그 동안의 수행기록, 최근의 현장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0조, 「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9조와 「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9조에 따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인정의 정지(시정조치 대상) 또는 관련 항목에 대한 인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KOLAS는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에 대한 공모가 발견된 경우, 해당 참가기관의 관련된 항목(시정조치 대상 또는 해당 중분류)에 대한 인정의 정지 또는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인정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KOLAS 공인기관은 인정의 재개 이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숙련도시험에 참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수행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10조(기밀유지) ①참가기관이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단 이 정보는 평가사 및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필요한 경우 KOLAS는 참가기관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시험결과를 활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③참가기관 그룹은 개선을 위한 논의 및 상호 지원의 목적으로 그룹 내에서 기밀유지의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제3장 KOLAS 공인기관의 숙련도시험 스킴 결과 활용 등

제11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검토) ①숙련도시험 스킴 결과는 참가

기관과 KOLAS 모두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결과를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의 제한이 있다. 특정 스킴에서 성공적인 수행도는 그 시험에 대한 능력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스킴의 비성공적인 수행도는 한 참가기관의 정상적인 능력상태에서 우연히 벗어난 경우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숙련도시험스킴 결과만으로 KOLAS는 인정판단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②KOLAS 공인기관은 숙련도시험의 구성 및 설계에 대해 평가하여 그들의 수행도에 대한 자체 결론을 유추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고려해야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숙련도시험아이템의 출처 및 특성
2. 사용된 시험 방법들과 가능한 경우, 특정 방법들에 따른 결과의 설정
3. 숙련도시험의 구성(예를 들면 통계적 모델, 반복 횟수, 측정할 파라미터, 수행방법 등)
4. 참가기관의 수행도를 평가하기 위해 숙련도시험운영기관이 사용한 기준

제12조(숙련도시험 스킴 결과의 활용) ①KOLAS는 참가기관의 숙련도시험 스킴 수행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평가 시 KOLAS 평가사/기술전문가가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제8조 제7항에 따른 의심 통보를 받은 참가기관은 차기 평가 시 KOLAS 평가반이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숙련도시험 참가 기관은 차후 숙련도시험 스킴 계획 및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숙련도시험 스킴의 기술적 내용 또는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KOLAS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숙련도시험운영기준」(국가기술표준원 제2018-0308호, 2018.11.22.)에 의한 숙련도시험운영, 숙련도시험결과의 활용, KOLAS 공인기관의 조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숙련도시험운영기준」(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308호:2018.11.22)은 폐지한다.

[별표 1]

KOLAS에서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제4조 제1항 관련)

1. KOLAS가 숙련도시험운영기관으로 인정(accreditation)한 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2. 아시아태평양인정협력체(APAC), 유럽인정기구협력체(EA) 등 지역 시험기관인정기구 협력체, 기타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ISO/IEC 17043에 부합한 숙련도시험 스킴
3.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MRA 체결 인정기구가 ISO/IEC 17043에 의해 인정(accreditation)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4. 기타 규제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으로 KS Q ISO/IEC 17043의 요건을 준수하고 KOLAS의 장이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5. 기타 KOLAS의 장이 허용(recognition)하는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비고: 1 ~ 4항의 숙련도시험 스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항의 스킴/프로그램이 선정가능하며, 별표 2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운영절차에 따른다. 단, 시험자간 비교시험을 실시할 경우, 해당분야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실무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별표 2]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운영절차 (제4조 제3항 관련)

1. 방침

- 가. 숙련도시험운영기준 별표 1의 1 ~ 4항의 해당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실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신청 시 시험기관간 비교시험을 우선으로 한다.
- 나. 교정분야는 「KOLAS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6조(측정심사)제2항에 명시된 기관에서 측정심사를 실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신청 및 접수

- 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신청기관은 해당되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KOLAS에 제출한다.
- 1) 신청기관의 명칭 및 법인/사업장 소재지 주소
 - 2) 시험기관(자)간 시험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관여하는 주관자 및 기타 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 3) 신청기관의 인정분야 및 인정신청 예정 분야
 - 4) 해당분야 숙련도시험스킴의 참가 실적 및 계획
 - 5) KOLAS가 허용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의 검토 여부 및 해당되는 경우 불참가 사유
 - 6)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계획서
 - 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에 참여할 잠정적인 참가자 및 참가자 수
 - 나) 측정량 및 관련된 시험, 측정 또는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 다) 품목(item)의 제작, 저장 및 배포요건

- 라) 품목의 균질성, 안정성 평가 방법 및 결과
 - 마) 해당되는 경우, 설정값의 근원 또는 결정방법, 측정소급성 및 측정 불확도
 - 바) 참가자의 수행도 평가 방법 및 기준
 - 사)스킴 참가요강
 - 아) 결과보고서(양식)
- 7) 자체 개발한 시험방법인 경우,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토자료
- 나. 교정기관 측정심사 신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정기관 측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KOLAS에 제출한다.
- 다. KOLAS는 필요할 경우 가,나항의 구비서류의 작성예시를 공고할 수 있다.

3.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 계획 검토 및 승인통보

- 가. KOLAS는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가 접수되면, 신청 사항의 적절성 검토 및 실시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나. KOLAS는 계획 검토를 위한 신청스킴의 신청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승인을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 등 신청한 스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하거나 승인을 거부한다.
- 1) 별표 1의 1 ~ 4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구에서 운영하는 숙련도시험 스킴에 참가가 가능한 경우
 - 2) 신청스킴이 KS Q ISO/IEC 17043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 KOLAS는 신청스킴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실시 승인이 결정되면 해당 스킴을 운영할 수 있는 숙련도시험운영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을 선정(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하여, 해당기관 정보와 함께 승인공문을 신청기관 및 선정된 운영기관에게 통보한다.
- 라. 운영기관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교정기관 측정심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4.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 실시

- 가. KOLAS로부터 해당 스킴/프로그램의 실시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시험기관(자)간 비교 시험/측정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운영기관은 측정심사, 시험자간 비교시험을 실시할 때 입회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기관간 비교시험의 경우에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수행도 검토

- 가. 운영기관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의 실시 결과를 통계적 방법에 의거 분석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결과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1) 참가기관의 결과보고서 등 단위사용의 적합성
 - 2) Raw data, 결과보고서 등 데이터작성 및 처리의 적합성
 - 3) 불확도 추정 보고서 등 불확도 평가 및 표현방법의 적합성
 - 4) 측정결과의 적합성(E_n 값 등)
 - 5) 종합의견
- 나. 운영기관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를 실시 후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참가기관 포함)에게 통보하고 최종결과는 e-KOLA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및 참가기관의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가 불만족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신청기관 및 참가기관의 참가실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를 실시한 이후 신청기관(참가기관 포함)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KOLAS 평가(사후관리 포함)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운영기관이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및 측정심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은 해당 운영기관의 KOLAS 평가(사후관리 포함) 시 평가한다.

6. 기밀유지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측정심사 결과에 대한 기밀유지는 제10조에 따른다.

